

의안 번호	1405	【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11. 10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11. 16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12. 5.(화)

2. 제안이유

포상의 종류에 “모범공무원 포상” 및 “공로패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, 현재 시행되지 않는 “구민질서상”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포상의 종류 개정(안 제4조)
 - 1) 현행 : 표창장, 감사장, 상장, 구민질서상
 - 2) 변경 : 표창장 및 표창패, 감사장 및 감사패, 상장 및 상패, 모범공무원 포상, 공로패
- 나. “구민질서상” 관련 조문 삭제(안 제4조, 제8조, 제11조)
- 다. 표창장 등 서식 디자인 개선 및 공로패 서식 신설(안 별지)
- 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포상의 종류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, 퇴직 공무원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기관·단체의 퇴직 임직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-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